

CHAPTER 01 해사기본안전법이란?

---

CHAPTER 02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

CHAPTER 03 해상교통관리시책

---

CHAPTER 04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산업의 진흥

---

CHAPTER 05 해양안전교육 및 문화 진흥

---

# 04.1

해사안전기본법

## 기출로 법규 맛보기

해사안전기본법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상교통안전법을 하위에 두는 상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사안전기본법은 해사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큰 정책을 다루는 곳, 즉 해사안전국의 해사안전정책과 소관의 업무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방청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정책 수립에는 지방청 및 관계기관들의 자료제출들이 필요하기에 본부에서 근무하던 지방청 선박계에서 근무하던 꼭 알아야 할 법령입니다.

해사안전법에서는 많은 기출문제들이 있었지만, 해사안전기본법으로 분류된 내용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해사안전법으로 바뀌며 추가되었던 해사안전기본계획과 관련한 내용만 출제되었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된 해사안전기본법 역시 시험에 출제될만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합격 후 업무와 반드시 연결될 내용들이므로 눈에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연도	문제번호	기출문제
2012	3 (5)	해사안전법상 '해사안전기본계획'

## 해사안전기본법의 연혁

### 1. 해상교통안전법

해상안전관리	-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해상교통관리	- 항법 및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의 설정과 관리
해상질서유지	- 항로 등의 보전 - 해상교통관제의 시행 등

### 2. 해사안전법

2011년 기존 해상교통안전법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며 전부 개정되었다.

-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감사제도에서 요구하는 해사안전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에서 연안국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해 밖 해양시설의 안전관리 및 난파물 처리

해사안전관리계획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양안전문화 진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선박의 항법

### 3. 해사안전기본법과 해상교통안전법

해사안전에 관한 제도와 정책의 기본 원칙은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제정되고, 선박 항법 등 국민이 준수해야 할 안전 규제는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나누어 제정되었다.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관리시책 등 (신설)	해상교통 안전관리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산업 진흥 (신설)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해사안전교육 및 문화 진흥	선박의 항법 등

[2023. 7. 25. 개정 법률 반영]

[2024. 2. 6. 개정 시행령 반영]

[2024. 2. 5. 개정 시행규칙 반영]

## 1 목적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에서 선박의 항행 및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장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확인하고, 해양의 이용이나 보존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사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4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사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상교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시설의 관리, 해상교통망의 구축 및 관리, 해상교통 관련 신기술의 개발·기반 조성 지원,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사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한 해양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한 해사안전 지식·정보의 제공, 해사안전 교육 및 해사안전 문화의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해사안전 관련 산업의 진흥 및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5 국민 등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해사안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선박·해양시설 소유자는 국가의 해사안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해양시설로부터 해양사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6 정의

### (1) 해사안전관리

선원 · 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 선박 · 화물 등 물적 요인,

해상교통체계 · 교통시설 등 환경적 요인, 국제협약 · 안전제도 등 제도적 요인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2) 선박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로

수상항공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와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 가까이 비행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 (3) 해양시설

자원의 탐사 · 개발,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계류·수리·하역, 해상주거·관광·레저 등의 목적으로

해저에 고착된 교량 · 터널 · 케이블 · 인공섬 · 시설물이거나 해상부유 구조물(선박은 제외)인 것을 말한다.

### (4) 해사안전산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 장비 · 시설 · 제품 등을

개발 · 생산 · 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5) 해상교통망

선박의 운항상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운항흐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영해 및 내수에 설정하는 각종 항로, 각종 수역 등의 해양공간과 이에 설치되는 해양 교통시설의 결합체를 말한다.

### (6) 해사 사이버안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을 보호함으로써 선박운항시스템과 정보의 기밀성 · 무결성 · 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 1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은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항행환경개선에 관한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A++ Note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포함 사항 (시행령 제2조)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사안전정책의 중장기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해사안전정책 환경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선박·해양시설 및 여객·승무원 등의 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 수역의 설정, 해상교통환경 조사 및 사고 위해요소 개선에 관한 사항
5. 선박의 항행 관련 항행보조시설·장비·정보통신체제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해사안전 관련 인력의 양성·수급에 관한 사항
7. 해사안전 지식의 보급 및 문화의 증진에 관한 사항
8.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해사안전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해사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해사안전 관련 제도·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해사안전 관련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3. 부문별·기관별·연차별 사업계획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해사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해사안전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해사안전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4 국회제출 및 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1 해상교통관리시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리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연안해역 등에 대한 교통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해상교통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교통관리시책의 수립·추진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2 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성 확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선박의 안전성 및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3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교통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3 선박안전도정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건수, 관계 법령이나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선박의 소유자·운항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1.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2.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항만에 기항하는 외국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그 밖에 국제해사기구 등 해사안전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선박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 A++ Note  
참고하세요!

다만, 다음의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는 사고개요, 해당 선박의 명세 및 소유자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
-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 등으로 멸실되거나 감항능력을 상실하여 선박에 대한 수난구호 또는 예인작업이 이루어진 사고
- 유류 30킬로리터 이상 또는 기름 100킬로리터 이상이 유출된 사고

### 4 안전투자의 공시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선박시설 유지보수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해사안전과 관련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A++ Note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1.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선박
2.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항만국통제)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외국선박
3.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외국의 항만국통제)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 정부의 항만국통제에 따라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
4.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지도감독에 따른 개선명령)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을 받은 선박

## 5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해사안전관리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2. 해사안전관리 업무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3. 해사안전관리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4. 신기술 접목 선박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관리와 관련한 대학·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와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A++ Note

## 해양교통안전정보란? (시행규칙 제4조)

1. 해양사고 및 사고 원인에 관한 정보
2. 선박의 등록 및 운항기록에 관한 정보
3. 선박의 위치 및 입항·출항에 관한 정보
4. 선박의 점검·검사 및 인증심사에 관한 정보
5. 선박 운용 관련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6. 선원의 면허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7. 선원의 승선·하선에 관한 정보
8. 선박 및 선원 공제에 관한 정보
9. 해운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
10. 항로, 수로 및 항만 등 해양 공간에 관한 정보
11. 해양시설에 관한 정보
12. 항로표지 등 항행보조시설에 관한 정보
13. 해양 기상 및 해상교통환경에 관한 정보
14. 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정보
15.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정보
1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1 국제협력의 증진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해사안전 동향 조사 및 정책 개발, 인력·기술의 교류 등에 관하여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추진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새로운 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2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이행계획 및 점검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 Note**    **IMSAS (IMO Member-states Audit Scheme)**

-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의 국제협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 7년을 주기로 회원국이 IMO의 기술적인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관리하는지를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 회원국은 감사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국 선박 용선 기피, 보험료 상승, 안전검사 강화 등 향후 해운활동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 A++ Note

## 이행계획 수립 시 고려할 협약과 포함사항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협약과 관련 규정에 따른 협약당사국으로서의 국가의 의무 및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2.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3.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4. 「국제 만재흡수선 협약」
5.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6.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제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국제해사기구의 규정

국제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협약등에 따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가 의무 및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제협약등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협약등에 따라 국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관리 및 해당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협약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협약등의 국내법 반영현황 및 계획 등
2.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인력의 자격, 선발 방법과 권한 및 관련 조직 등
3.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등
4.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
5. 그 밖에 이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롭게 등장하는 해사안전 분야의 신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사, 기술개발, 기반시설 구축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4 해사안전산업 실증시설 및 시범지구 조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사안전에 필요한 신기술이 반영된 선박,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실증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각종 해사안전산업 분야의 실증사업을 위하여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해양안전교육 및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체험활동 사업
2.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사업
3.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사업
4.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5. 그 밖에 해양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 2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이 해양안전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 해양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2. 체험형 해양안전교육사업의 실시
3. 해양안전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교육·훈련
4. 해양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수요조사
5. 그 밖에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3 해양안전현장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에 관한 사항과 해사안전관리 등 해양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해양안전현장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안전과 관련된 행정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현장을 관계 시설이나 선박 등에 게시하는 등 해양안전현장의 내용을 관계자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해양안전의 날 및 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